

배포 일시	2022. 11. 22.(화)		
담당 부서	물류정책관	책임자	과 장 박진홍 (044-201-4016)
	물류산업과	담당자	사무관 정일웅 (044-201-4018)
보도일시	※ 2022년 11월 22일(화) 15:00 이후 보도 가능		

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 계획 철회를 촉구합니다.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11월 24일 새벽 0시로 예정된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, 관계부처와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하여 물류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.
- 이번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한 국토부의 입장과 대응 계획은 다음과 같다.

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에 대한 국토부 입장 】

- “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”는 이해당사자인 화주, 운수사, 차주의 의견이 참여하게 대립하고 있는 제도로,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.
 - 국토부는 그간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거친 결과, 현행 컨테이너·시멘트에 적용중인 안전운임의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되, 품목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며, 이러한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국회 논의에 임할 계획입니다.
 - 우선, 일몰 연장과 관련하여, 한시적인 제도 시행 결과 당초 제도의 목적인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 일몰 연장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추가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
 - 아울러, 컨테이너·시멘트 화물차 운전자의 근로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.

< 안전운임제 시행 전후 교통사고 사망자수·사고건수 비교 >

(괄호: 전년 대비 증감률)

구분	차종	시행이전	시행 이후		'19년 대비 '21년 증감률
		2019년	2020년	2021년	
교통사고 사망자수(명)	전체 자동차	3,349	3,081(8.0%↓)	2,916(5.4%↓)	12.9% ↓
	견인형 화물차*	21	25(19.0%↑)	30(20.0%↑)	42.9% ↑
교통사고 사고건수(건)	전체 자동차	229,600	209,654(8.7%↓)	203,130(3.1%↓)	11.5% ↓
	견인형 화물차	690	674(2.3%↓)	745(10.5%↑)	8.0% ↑

* '견인형 화물차'는 전체 사업용 견인형 화물차 3.5만대를 기준으로 한 통계수치이며, 안전운임제 대상 차량(컨테이너·시멘트)은 견인형 화물차의 78%(2.75만대)임

○ 적용 품목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제도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,

-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, 화물연대본부가 확대를 요구하는 자동차, 위험물 등의 다른 품목들은 컨테이너·시멘트 대비 차주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적용 필요성이 낮습니다.

- 또한, 품목을 확대할 경우 수출입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산업의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상승 등 소비자와 국민의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.

- 아울러,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는 컨테이너·시멘트는 표준화·규격화가 용이하나, 다른 품목들은 제품, 운송형태 등 품목별 특성이 매우 다양하여 일률적인 운임 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.

□ 국토부는 이해당사자인 화주, 운수사, 차주의 의견을 포함하여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만큼, 국회에서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논의가 조속히 마무리되고 입법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요청 드립니다.

【 성숙한 자세로 집단행동을 철회할 것을 화물연대본부에 촉구 】

□ 최근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,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및 세계경제의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으며, 우리 경제 역시 위기와 직면하고 있어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시기이나,

- 지난 6월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로 국가경제에 큰 피해가 발생한지 불과 5개월만에 또 다시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있습니다.
- 화물연대본부는 최근 국가경제 상황과 국민의 우려에 대해 성숙한 책임의식을 갖고 지금까지도 집단운송거부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,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.

【 집단운송거부 강행시 물류피해 최소화 및 불법행위 엄정 대처 】

- 정부는 이번 집단운송거부에 대비하여 경찰청·해수부·산업부·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, 유관기관 간 긴밀히 협조하여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는 등 국가경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.
- 항만·ICD·고속도로 요금소, 휴게소 등 중요 물류거점에는 경찰력 사전 배치 및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방지하고, 군위탁 컨테이너,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등 화물 수송력을 증강하겠습니다.
- 또한, 운송참여자에 대한 혜택(인센티브)을 제공하기 위해 집단운송거부기간 중 10톤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계획입니다.
- 한편, 경찰과 협조하여 정상적으로 운송을 수행하는 화물차 운전자가 안심하고 운행하실 수 있도록 하고, 운송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.
- 일선 화물차 운전자분들께서는 화물연대본부의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마시고 평소와 다름없이 생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

참고 1

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·환불 계획

□ 통행료 면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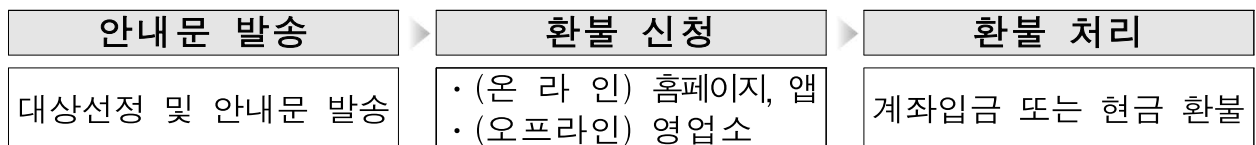
- (면제기간) '22. 6. 7(화) 00:00 ~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 까지
- (면제구간) 고속도로 **소구간** (민자고속도로 포함)
- (대상차량) 국토부 지정 **대체수송차량**으로
식별표지 및 **통행료 면제확인증**을 발급받은 차량
*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면제확인증을 발급 받은 차량에 대해서만 면제
- (면제방법) **하이패스**는 정상 납부 후 **사후 환불**
* (선불카드) 사후 충전, (후불카드) 카드사 미청구
일반차로는 **즉시 면제** (식별표지 부착, 면제확인증 제시)
※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외부에서 대체수송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전면 유리창의 좌측 하단에 **식별표지**를 부착하고, **통행료 면제 확인증**을 요금소 직원에게 제시

□ 식별표지 및 면제 확인증 발급

- (발급장소)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 **소 영업소** (367개소)
- (발급시간) **09:00 ~ 18:00** (주말·공휴일 포함)
- (발급방법) **자동차등록증** 및 **신분증** 지참 영업소(사무실) 방문
대상차량 확인 후 식별표지 교부(전산등록·출력)

□ 통행료 환불

- (환불대상) 식별표지 발급 차량 중 기간 내 정상납부 이용차량
* 식별표지 발급 이전 통행료는 소급 적용
- (환불시기) 집단운송거부 종료 후 안내문 발송 시 별도 안내
- (환불절차)



□ 문의처 :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-2504

참고 2**통행료 면제 식별표지 및 면제확인증 서식**

- 식별표지** : 차량 전면 유리창의 좌측 하단에 부착

No. 예)1-23 (차량부착/게시용)

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차량

- 사용기간 : 2022. 11. 24. 00:00 ~ 정상화 시까지
- 차량번호 : _____

위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임을 확인함

국토교통부장관 (인)

- 면제확인증** :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통행료 면제 확인증을 제시

No.

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확인증

- 사용기간 : 2022. 11. 24. 00:00 ~ 정상화 시까지
- 차량번호 : _____
- 면제구간 : 모든 고속도로(재정·민자 고속도로)
- 이용방법 : 요금소 부스 제출 후 통과

위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임을 확인함

국토교통부장관 (인)